

#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민사소송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일 외 진술 등 부적법한 소송행위 금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

## 3. 주요내용

-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, 전화, 휴대전화 문자전송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(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)
- 재판장은 이를 어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음(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)

## 4.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) ①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, 전화, 휴대전화 문자전송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	<p><u>제17조의2(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) ①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, 전화, 휴대전화 문자전송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.</u>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416